

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

반대 및 철회 의사가 있는 토지등소유자께서는 후보지 추천(區→市)전까지 제출된 반대 및 철회 동의서에 한해 인정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아래 구역계는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계로 후보지 추천시 일부 변경·조정될 수 있음



○ 연락처 : 010-4080-4288

3. 동의양식 번호 및 부여일자

- 우리 구에서는 동의양식번호를 추진주체별 1개만 부여합니다. 동의양식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추진주체임을 참고하셔서 동의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
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	수유동 540번지 일대 제 13 호
번호부여일자	2025. 10. 02.
확인(인)	

4. 공개 장소

- 강북구 홈페이지 > 분야별 정보 > 주택 > 신속통합기획 > 신속통합기획 번호부여 현황
- 번호부여 신청구역의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

5. 기타 안내사항

-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,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이 추천일 (區→市) 또는 별도 區 요청일이 되고,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.
- 후보지로 선정,미선정 및 보류된 구역은 건축허가등 제한구역으로 지정됨.
- 「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」에 따른 구역지정 기본요건 미충족 및 후보지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이 불가함.
- 동일(또는 일부 중복)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주체 추천 불가 원칙에 따라, 다수 추진주체가 동일(또는 일부 중복) 구역에 대하여 동의서 징구할 경우 후보지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- 후보지 공모 신청 전 구역계를 추진주체에서 임의로 변경할 경우, 동의서 번호를 새로 부여받아야 함.
- 「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」에 따른 찬성동의서, 반대 동의서, 동의 철회서만 인정함.
→ 찬성동의서는 강북구청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.